

울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129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변론 종결 2020. 5. 15

판결 선고 2020.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차47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12. 29. 'C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위 지급명령은 2016. 1. 4. C에게 송달되어 2016.1. 19. 확정되었다.

나. (그는 2016. 3. 3. 아버지인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답 2,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6. 3. 23.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약정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가 D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9369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와 C 사이에2016. 3. 23. 체결한 합의해제약정을 취소하고,위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 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7. 1.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1억 2, 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 1. 24.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16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따라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배당순위 3순위로, 원고가 신고한 채권금액

323,067,500원(원금 2억 5,000만 원,이자 73,067,500원) 중 229,089,597원이 원고에게,피고의 가압류채권액인 1억 2,000만 원 중 85,092,904원이 피고에게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피 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를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7237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이라 한다)

사.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8. 10.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8나26055호로 항소하였

다. 제2심법원은 2019. 4. 11. C가 2016. 3. 23.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문자메시지 등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결국 원고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4년에 걸쳐 5번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불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